

검 토 보 고 서

| 안 건 명 | 부서명 | 페이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세무1과 | 1 |
| 2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세무1과 | 4 |

(2012. 3. 5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2월 21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2년 2월 23일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 12. 31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과 관련하여, 우리 구 감면조례 조문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고,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1조에서는 감면조례 제1조(목적)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감면사항 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)뿐만 아니라, 개별 조문에서 감면율을 감면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”를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”로 인용법규를 개정함
- (2)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에서 100/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, “재산세를 면제한다”를 “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”라고 서울시 전체가 통일시켜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을 규정함
- (3) 안 제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, 안 제5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, 안 제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, 안 제9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4개의 조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함

(4) 안 제19조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감면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“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”를 “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”로 개정함

< 검토의견 >

○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 12. 31일 개정 공포된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에서 구세감면조례 제4조(지방공사에 대한 감면)등 4개의 조항이 이관 신설되어,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며, 인용법규 및 규정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